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4. 4. 23(수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4. .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. 4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4. 23.(제2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도시계획국장 하 명 국
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14. 1. 14 공포, 2014. 1. 17 시행)됨에 따라 용·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 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(Negative)으로 전환하고,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,
-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1,2종 전용주거지역내에서 바닥면적 1천㎡ 미만의 한옥으로 건축되는 체험관 입지 추가 허용 (안 제31조제2호 및 제32조제2호)
- 용·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(Negative)으로 전환(안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43조, 제49조)
 - * 준주거, 상업(중심·일반·근린·유통), 준공업, 계획관리지역
- 유통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(안 제64조 제1항)
- 방화지구내 건폐율 완화대상 정비(안 제64조 제4항)
- 한옥, 전통사찰, 지정·등록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(안 제64조 제6항)
-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·용적률 완화(안 제64조 제11항, 안 제65조 제10항)
-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제한 규정 신설(안 제68조 제6항)
- 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신설(안 제71조 제4항)
-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를 군수·구청장에게 권한위임 (별표 3)
- 미관지구(중심지, 일반)내 소규모 의원급 정신병원 건축 허용(안 제54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.
- 제64조제2항제1호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단서조항을 두어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%로 상향조정하는 사유와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에서 명시된 조문 내

용 중 주택 밀집지역을 조례안 제36조 제1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유와

- 제84조 제1항에 의거 금번 개정조례안에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안 제64조제2항 취락지구의 건폐율 중 도서지역인 경우 건폐율을 60%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(이도형 의원)
⇒ 용진군의 기관 건의 사항으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임.
- 안 제36조 제1항 중 “주거지역”을 “주택 밀집지역”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?(김병철 의원)
⇒ 그렇습니다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: 4명, 찬성 : 4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3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6조제1항 중 각각의 “주거지역”을 각각 “주택 밀집지역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6조(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<u>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7호의 판매시설</p> <p>3. (삭제 2009.1.12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p> <p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	<p>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<u>주거지역</u>과 차단되거나 <u>주거지역</u>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<u>주거지역</u>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</p>	<p>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<u>주택 밀집지역</u>과 차단되거나 <u>주택 밀집지역</u>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<u>주택 밀집지역</u>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나.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다. 「<u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라. 「<u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	<p>2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</p> <p>3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 마. 고압가스 판매소 바. 도료류 판매소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. 화약류 저장소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4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. 검사장</p>	
--	--	--

<p> <u>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u> <u>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</u>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표 1 제18호의 차고시설</u>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<u>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</u>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<u>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</u> 다. <u>위험물취급소</u> 라. <u>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</u>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표 1 제20호의 자</u> </p>	<p> 나. <u>매매장(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)</u> 다. <u>정비공장</u> 라.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, 「<u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및 「<u>건설기계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차고 및 주차장</u>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<u>가축시설(가축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자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,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</u> 나. <u>동물원·식물원</u>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</u>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<u>별</u> </p>	
---	--	--

<p><u>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</p> <p>가. 주차장 나. 세차장 다. 운전학원·정비학원 라. 매매장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버섯재배사 나. 종묘배양시설 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(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(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</p>	<p>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관망탑 나. 휴게소 다.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	
---	--	--

<p>외)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 표 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 전시설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 광휴게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. 야외음악당 나. 야외극장 다. 어린이회관</p> <p>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 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경우에 한한다)</p>		
--	--	--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”를 “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31조제2호 및 제32조제2호 중 “(박물관·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)”을 “[박물관·미술관·체험관(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) 및 기념관에 한한다]”로 각각 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
 -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
 -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
 -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
 - 마. 고압가스 판매소
 - 바. 도료류 판매소
 -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 - 아. 화약류 저장소
 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검사장
 - 나. 매매장(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)
 - 다. 정비공장
 - 라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가축시설(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
 - 나. 동물원·식물원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
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- 가. 관망탑
 - 나. 휴게소
 - 다.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(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)은 건축할 수 있으며, 같은 호 다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라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]

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
 -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
 -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
 -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
 - 마. 고압가스 판매소
 - 바. 도료류 판매소
 -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 - 아. 화약류 저장소
 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(같은 호 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8조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

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건축할 수 있다.]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
 -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
 -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
 -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
 - 마. 고압가스 판매소
 - 바. 도료류 판매소
 -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 - 아. 화약류 저장소
 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작물 재배사
 - 나. 종묘배양시설
 - 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 - 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 - 마. 동물원·식물원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다
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
가. 교정시설

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
다.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
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9조(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건축할 수 있다.]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
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

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

-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
 -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
 - 마. 고압가스 판매소
 - 바. 도료류 판매소
 -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 - 아. 화약류 저장소
 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- 가. 작물 재배사
 - 나. 종묘배양시설
 - 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 - 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 - 마. 동물원·식물원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0조(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마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고시원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
 -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
 -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
 -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
 - 마. 고압가스 판매소
 - 바. 도료류 판매소
 -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 - 아. 화약류 저장소
 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가. 교정시설
 - 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 - 다.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다만, 연립 및 다세대 주택(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

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과 아파트{기존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,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(해당 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),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(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)}는 제외한다.]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다만,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

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9조(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(이 경우,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,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이라 함은 지구면적 10,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)

②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

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·제과점,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·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, 역사·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·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정신병원”을 “정신병원(입원환자실이 없는 소규모 의원급 시설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제10호 중 “식품공장”을 “식품공장(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제10호 “유통상업지역 : 60퍼센트”를 “유통상업지역: 70퍼센트”로 한다.

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취락지구: 50퍼센트(다만,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)

제64조제4항제1호 중 “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”을 “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녹지지역·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”를 “녹지지역·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”로 한다.

제6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

한다.

제6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영 제85조제5항에”를 “영 제85조제6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영 제85조제7항”을 “영 제85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6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. 다만,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,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)에 하여야 하며,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,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	법 제56조 내지 제65조 영 제51조 내지 제61조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0호란 다음에 제10의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(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)	법 제58조 영 제56조의2부터 영 제56조의4까지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5호, 제16호,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5. 토지출입 등에 관한 사무(위임된것에 한함)	법 제130조
16.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·처분에 관한 사무 (위임된것에 한함)	법 제133·136·137조
17. 과태료 등에 관한 사무(위임된것에 한함)	법 제144조, 영 제134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43조, 제4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6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②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(박물관·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31조(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[박물관·미술관·체험관(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) 및 기념관에 한한다]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(박물관·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</p>	<p>제32조(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(박물관·미술관·체험관(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) 및 기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천제곱미터 미만인 것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36조(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</p> <p>3. (삭제 2009.1.12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p> <p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</p>	<p>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</p> <p>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</p> <p>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</p>

현행	개정안
<p>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라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</u>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. 위험물취급소 라.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</u></p>	<p>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 마. 고압가스 판매소 바. 도료류 판매소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. 화약류 저장소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검사장 나. 매매장(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) 다. 정비공장 라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<u>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가축시설(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자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사육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 나. 동물원·식물원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</u>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</p> <p><u>가. 주차장</u></p> <p><u>나. 세차장</u></p> <p><u>다. 운전학원·정비학원</u></p> <p><u>라. 매매장(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</u>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<u>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</p> <p><u>가. 버섯재배사</u></p> <p><u>나. 종묘배양시설</u></p> <p><u>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</u></p> <p><u>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(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</u>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교정 및 군사시설(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)</u>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<u>방송통신시설</u>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<u>발전시설</u>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<u>관광휴게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</p> <p><u>가. 야외음악당</u></p> <p><u>나. 야외극장</u></p>	<p><u>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</p> <p><u>가. 관망탑</u></p> <p><u>나. 휴게소</u></p> <p><u>다.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</u>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<u>장례식장(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다. 어린이회관</p> <p>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)</p> <p>제37조(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되, 같은 호 아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라목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으며,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	<p>제37조(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)은 건축할 수 있으며, 같은 호 다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라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]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(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정한다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)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(격리병원을 제외한다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·인쇄업·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p> <p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</p>	<p>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</p> <p>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</p> <p>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</p> <p>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</p> <p>마. 고압가스 판매소</p> <p>바. 도료류 판매소</p> <p>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</p> <p>아. 화약류 저장소</p> <p>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(같은 호 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한다)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</p>

현행	개정안
<p>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라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p>	<p>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</p>

현행	개정안
<p>건축물</p> <p>가. <u>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</u></p> <p>나.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에 의한 <u>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</u></p> <p>다. <u>위험물취급소</u></p> <p>라. <u>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</u></p> <p>10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</u></p> <p>11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28호의 <u>장례식장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제38조(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<u>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(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)에 한하고, 같은 호 차목의 숙박시</u></p>	<p>제38조(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<u>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카목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②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p> <p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</p>	<p>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건축할 수 있다.]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</p> <p>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</p> <p>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</p> <p>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</p> <p>마. 고압가스 판매소</p> <p>바. 도료류 판매소</p> <p>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</p> <p>아. 화약류 저장소</p>

현행	개정안
<p>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라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</p> <p>다. 위험물취급소</p> <p>라.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</p> <p>제39조(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10</p>	<p>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작물 재배사</p> <p>나. 종묘배양시설</p> <p>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</p> <p>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마. 동물원·식물원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교정시설</p> <p>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</p> <p>다.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</p> <p>제39조(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(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)에 한하고, 같은 호 파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.</p>	<p>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
<p>②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. 다만, 주거지역 경계 	<p>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[다만,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.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건축할 수 있다.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

현행	개정안
<p>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.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p> <p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</p> <p>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라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</p>	<p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</p> <p>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</p> <p>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</p> <p>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</p> <p>마. 고압가스 판매소</p> <p>바. 도료류 판매소</p> <p>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</p> <p>아. 화약류 저장소</p> <p>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작물 재배사</p> <p>나. 종묘배양시설</p> <p>다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</p> <p>라.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마. 동물원·식물원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국방·군사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</p>

현행	개정안
<p>것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</u>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<u>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</u>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<u>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</u> 다. <u>위험물취급소</u> 라.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<u>액화석유가스충전소</u>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u> 가. <u>주차장</u> 나. <u>세차장</u> 다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·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의한 <u>차고 및 주기장</u>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<u>교정 및 군사시설(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은 제외)</u>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<u>방송통신시설</u>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<u>발전시설</u></p>	

현행	개정안
<p>제40조(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. (삭제 2009.1.12)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에 한정한다) 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. 다만,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. 	<p>제40조(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 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마목의 위락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고시원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소·저장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.) 나.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 다.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라. 유독물 보관·저장·판매시설 마. 고압가스 판매소 바. 도료류 판매소 사. 도시가스 제조시설

현행	개정안
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주유소(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) 및 석유판매소</p> <p>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</p> <p>다. 위험물취급소</p> <p>라.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</p> <p>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·군사시설시설</p> <p>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</p> <p>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</p>	<p>아. 화약류 저장소</p> <p>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가. 교정시설</p> <p>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의 용도로 쓰는 시설</p> <p>다.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</p>
<p>제43조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</p>	<p>제43조(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①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</p>

현행	개정안
<p>단독주택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</p> <p>가. 연립 및 다세대주택(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</p> <p>나. 아파트</p> <p>1)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</p> <p>2)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(해당 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)</p> <p>3)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(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)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 별표1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</p>	<p>공동주택[다만, 연립 및 다세대주택(군수·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.)과 아파트{기존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,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(해당 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),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(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)}는 제외한다.]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다만,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</p>

현행	개정안
<p>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다만,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(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)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</p> <p>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</p> <p>제49조(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(다만,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, 이 경우 별표 제</p>	<p>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)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</p> <p>제49조(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(이 경우,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,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0호</p>

현행	개정안
<p>2호에서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이란 지구면적 10,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)</p> <p>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</p> <p>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·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</p> <p>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p> <p>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</p> <p>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같은 호 다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</p>	<p>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이라 함은 지구면적 10,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운동시설(운동장을 제외한다)</u></p> <p>10.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15호의 <u>숙박시설</u></p> <p>11. 「<u>수도권정비계획법</u>」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<u>자연보전권역</u> 및 「<u>환경정책기본법</u>」 제22조에 따른 <u>특별대책지역</u>에 설치되는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별표 1 제17호의 <u>공장 중 부지면적(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)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</u></p> <p>가. 영 별표 19 제2호자목(1)부터 (4)까지에 해당하는 것</p> <p>나. <u>화학제품제조시설(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). 다만, 물·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·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</u></p> <p>다. 제1차금속·가공금속제품 및 기</p>	

현행	개정안
<p><u>계장비제조시설중 「폐기물관리법시행령」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</u> <u>라.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</u> <u>마. 섬유제조시설중 감량·정련·표백 및 염색시설</u></p> <p>12. (삭 제 2009. 1. 12)</p> <p>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(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)</u></p> <p>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u></p> <p>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</u></p> <p>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<u>관광휴게시설</u></p> <p>17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 및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<u>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</u></p> <p>② <u>군수·구청장은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, 역사·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게음</u></p>	<p>② <u>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·제과점,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·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식점·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·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, 역사·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·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
<p>제54조(건축제한)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중심지미관지구 가. ~ 다. (생략)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<u>정신병원·격리병원</u></p> <p>마. ~ 거. (생략)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4조(건축제한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<u>정신병원(입원환자실이 없는 소규모 의원급 시설은 제외한다)</u> ----- 마. ~ 거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0조(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)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<u>식품공장</u>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(1)부터 (4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</p>	<p>제60조(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<u>식품공장</u> (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는 것</p> <p>11. ~ 12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6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</p> <p>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10. 유통상업지역: 60퍼센트</u></p> <p>11. ~ 21. (생략)</p> <p>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.</p> <p><u>1. 취락지구: 50퍼센트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.</p> <p>1. 해당 건축물의 <u>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</u> : 80퍼센트</p>	<p><u>을 직접 가공하여 식물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4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유통상업지역: 70퍼센트</u></p> <p>11. ~ 2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. 취락지구: 50퍼센트(다만,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)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와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: 90퍼센트</p> <p>가.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,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,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</p> <p>나.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,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,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·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,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 <p>⑦ ~ ⑩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2. 삭제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녹지지역·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⑦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·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⑥ 허가권자는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지역·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=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+ [1.5 × (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×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) ÷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] 이내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68조(구성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	<p>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 <p>제6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영 제85조제6항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영 제85조제8항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⑦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 <p>제68조(구성)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71조(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. 다만,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,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.</p> <p>제71조(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)에 하여야 하며,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,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</p>